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김종덕
최보영
엄준현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 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 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AER,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그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장 한정택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김종덕 · 최보영 · 엄준현 · 정민철

연구자료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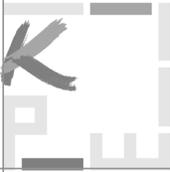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T. 044-863-6566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427-5 94320

978-89-322-2064-2(세트)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인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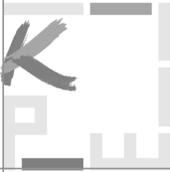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 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5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15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16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17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20
5. 자료 구축	21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24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4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25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51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51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55
참고문헌	57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59
Executive Summary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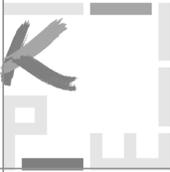


표 차례

표 2-1.	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16
표 2-2.	MAST 법 분류체계	21
표 3-1.	한국 법령의 분야별 분류	24
표 3-2.	과학·기술 비관세조치 현황	26
표 3-3.	담배·인삼 비관세조치 현황	27
표 3-4.	농수산 비관세조치 현황	29
표 3-5.	축산 비관세조치 현황	31
표 3-6.	산림 비관세조치 현황	34
표 3-7.	상업·무역·공업 비관세조치 현황	35
표 3-8.	공업규격·계량 비관세조치 현황	38
표 3-9.	에너지이용·광업 비관세조치 현황	39
표 3-10.	전기·가스 비관세조치 현황	40
표 3-11.	국토개발·도시 비관세조치 현황	42
표 3-12.	보건·의사 비관세조치 현황	43
표 3-13.	약사 비관세조치 현황	45
표 3-14.	환경 비관세조치 현황	47
표 3-15.	육운·항공·관광 비관세조치 현황	50
표 4-1.	한국의 비관세조치 개황	51
표 4-2.	유형별 비관세조치 수	52
표 4-3.	분야별 법률문서, 규제, 비관세조치(NTM)	53
표 4-4.	소관부처별 비관세조치 수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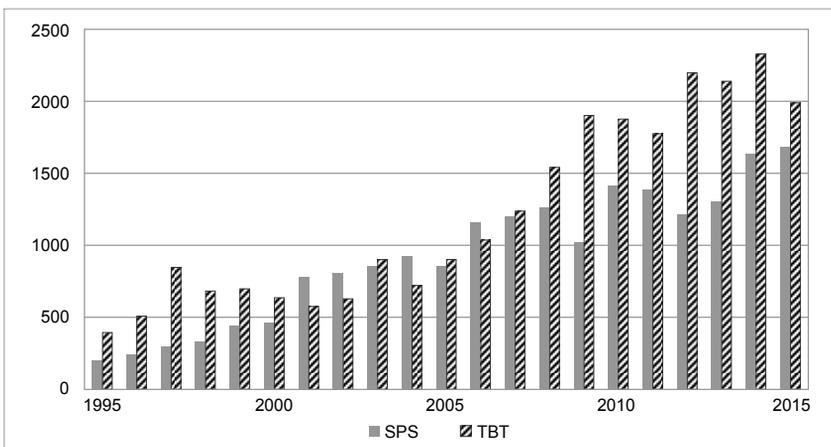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연도별 SPS 및 TBT 통보건 수	9
그림 2-1. 대한민국 법령의 위계	18
그림 2-2. 대한민국의 입법 절차	19
그림 2-3. 비관세조치 코딩 단계 작업 예시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면서 최근 각국 정부의 수출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확산 등에 따라 사실상 후퇴가 어려운 관세조치보다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과 같은 비관세조치가 늘어나면서 관세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무역상기술장벽(TBT) 및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확대되어 각각 1995년에 389건과 198건에서 2005년에 902건과 85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심화되어 2015년에는 통보건수가 각각 1,988건과 1,682건에 이른다.

그림 1-1. 연도별 SPS 및 TBT 통보건 수



자료: WTO SPS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24).

MAST 분류체계의 정의상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는 국제 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책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비관세조치가 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UNCTAD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 비관세조치 가운데 70% 정도가 통관 절차상 실제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Evenett and Fritz(2015)의 보고서에서도 다자통상체제 차원의 진전된 무역자유화 논의 부재와 이로 인한 미시적 보호주의(Micro-protectionism)의 등장을 무역성장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G20 국가에서만 약 3,500건 이상의 보호주의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개별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를 합산하여 고려한다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도 그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왔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통관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제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무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드물며, 그나마 축적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마저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제한된 내용만 담고 있어 실제 기업차원의 비관세장벽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는 달리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중장기 차원에서 수출 부진 타개와 FTA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 차원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와 연계하여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

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UNCTAD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일정한 분류체계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과 아세안 등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상대국이 유지·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근거 법령이나 제도를 확인하여 이를 DB로 구축하는 작업은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구축된 비관세조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정책의 효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UNCTAD는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축적된 자료에 기초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장기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를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각국이 WTO에 통보한 자료를 기초로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WTO에 통보된 자료 자체가 실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보된 비관세조치가 어떤 품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효과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다.¹⁾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UNCTAD를 중심으로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작업한 비관세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초 DB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56개 국가에 대한 DB 자료가 완성 및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도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공동

1) TBT와 SPS 통보문의 70%는 HS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으로 진행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회원국 대상 비관세조치 데이터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부터 참가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 역시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법령에 존재하는 비관세조치를 체계적으로 식별 및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향후 여러 방면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의 비관세조치 자료는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모든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념상 비관세조치에서 관세는 제외되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조치는 제외되어 중앙정부의 조치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종을 이루는 법령으로, 본 보고서가 서술하고 있는 자료의 주된 출처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www.law.go.kr)에 기반을 둔다.²⁾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최근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목적과 분석 방법에 따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의 예로 박종찬, 박상길(2010)은 한·중·일 3국의 관세장벽과 함께 비관세장벽의 실태를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한국은 직접적인 수입규제나 산업정책적인 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준 외(2011)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의 TBT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태정, 문선웅(2014)은 시장가격과 CIF 간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변형하여 한·중 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최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검색일: 2016. 10. 2).

보영 외(2015)는 WTO i-TIP을 활용하여 한·중·일의 TBT와 SPS의 연도별, 산업별 빈도지수와 범위 비율을 계산하고, 3국의 비관세조치와 관세장벽이 역내와 역외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 WTO i-TIP은 WTO TBT와 SPS 통보문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 HS코드가 다수 누락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UNCTAD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세계무역 80% 이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정량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Cadot, Munadi and Ing.(2015)은 65개국의 비관세조치와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수준(incidence)과 비관세조치의 강도(severity)를 비교해보았다. 빈도지수와 범위비율로 나타내는 비관세조치의 수준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EU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논문은 비관세조치의 강도를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계측하여 국가별, 산업별로 비교분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Cadot *et al.*(2015)은 UNCTAD 데이터를 이용한 규제거리지수(regulatory distance indicator)를 개발하여 국가간 규제가 상이한 정도를 계측하고, 이를 지역 통합의 지표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축 과정에 있는 동 데이터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술한 분석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자료가 기존 연구와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UNCTAD, World Bank, OECD 등이 제시한 MAST 분류체계 방식에 따라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관세조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비관세장벽 분류는 2006년 UNCTAD의 코딩(cod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관세장벽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되고, 이후 UNCTAD와 WTO 사무국에 의해 수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둘째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이 소개되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규제 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지속 성장의 발판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규제 자체가 철폐의 대상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도 적절성과 필요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개별 조치가 '장벽'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셋째로,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분야에 적용되는 한국의 법령을 모두 분석하였다. 기존의 비관세조치 분석 연구들은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제한된 법령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 관련 법령을 모두 점검하였다.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본 연구자료가 서술하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는 UNCTAD, WTO, OECD 등 국제기구로 구성된 MAST의 분류체계³⁾를 따른다. MAST 분류체계에서는 비관세조치를 A부터 P까지 총 16개의 장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를 포함하는 A장,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을 포함하는 B장, 선적 전 검사를 다루는 C장은 기술적 조치로 분류된다. 그 외 D장부터 O장까지는 수입관련조치 중 비기술적 조치로 분류되며, 수출 관련 모든 조치는 P장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A부터 I 그리고 P는 각 조치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A1의 경우 SPS조치 중에서도 SPS를 원인으로 하는 수입 금지 및 제한을, A2의 경우 특정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잔류 허용량 한계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보통 2단위 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몇몇 조치에 대해서는 3단위까지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다. J부터 O장은 아직 MAST에서 분류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체계에 따른 각 장별 분류는 [표 2-1]과 같다.

3) MAST 분류체계에 따른 비관세조치는 UNCTAD(2012)를 따른다.

표 2-1. 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수입관련조치	기술적 조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B	역상기술장벽(TBT)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비기술적 조치	D	조건부 무역보호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	수량제한조치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G	금융조치
		H	경쟁관련 조치
		I	무역관련 투자조치
		J	유통제한
		K	판매 후 서비스 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금 제외)
		M	정부조달 제한
		N	지식재산권
		O	원산지규정
수출관련조치	P	수출관련조치	

자료: UNCTAD(2012)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법령은 총 44개의 분야(편)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 4,649건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44개의 법령 분야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앞서 UNCTAD와의 협의를 통해 비관세조치와 관련 있는 2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여기에 속하는 총 2,408 건의 법령에 대해 최초 식별⁴⁾ 작업을 거쳐 480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480개 법령에 대해서는 UNCTAD에서 제공하는 자료 수집 방법론에 따라 실제적으로 법령의 각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병행한다. 최종

4) 이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의 3단계 절차는 본 장의 5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축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법령 1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총 25개 분야가 아닌 15개 분야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비관세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7개 분야와 아직 UNCTAD와 논의가 진행 중인 3개 분야⁵⁾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이 3개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경우 일부 수치가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나 각 분야별 분석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수집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체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헌법이다. 헌법은 국내 법체계에서는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령은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직접 구체적인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2단계는 법률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⁶⁾ 법률은 국내 법체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만이 입법을 할 수 있다.⁷⁾ 더불어 조약과 국제관습법(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표현하고 있음)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여타 조약(예: 양국간 항공협정)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⁸⁾ 더불어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

5) 제외된 3개 분야는 관세, 내국세, 정보통신 분야이다. 관세와 내국세는 비관세조치로써 취급 여부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보통신 분야는 아직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6)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7)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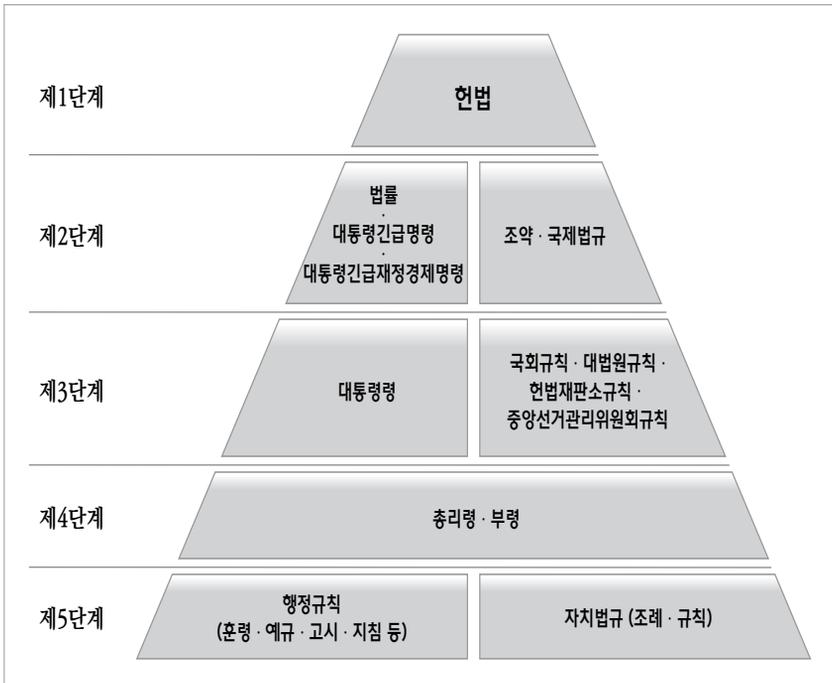
8)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20).

이 발령하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단계는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 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통해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대통령령과 같은 위상에 있다. 그러나 성질상 대통령령 이외의 이 규칙들이 직접 구체적인 비관세조치를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4단계는 총리령과 부령이다. 총리령과 부령은 앞서의 대통령령과는 달리 소관사항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총리령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안전

그림 2-1. 대한민국 법령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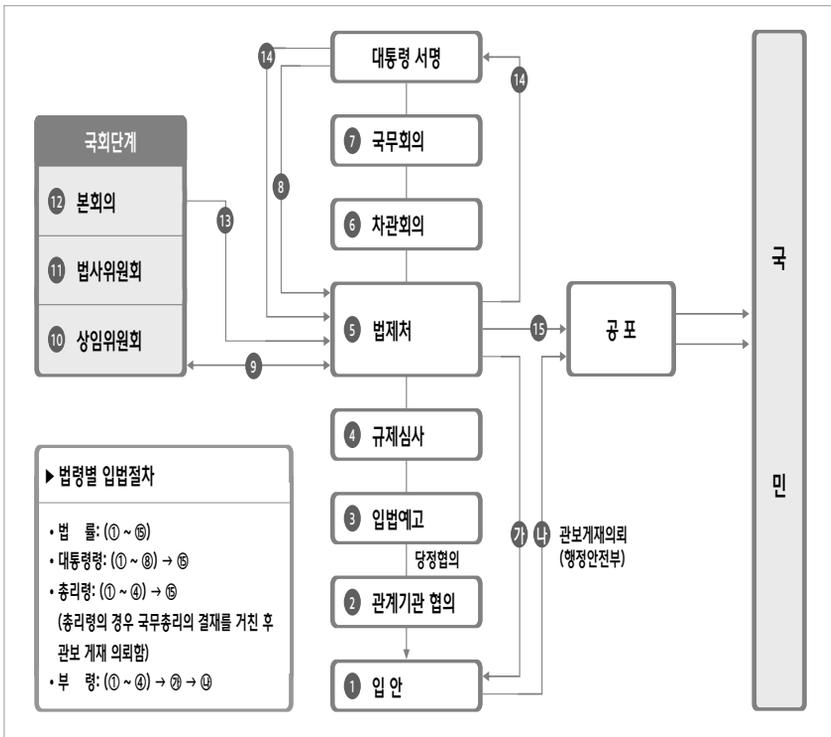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20).

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을 규율하며, 부령은 각 부의 소관사항을 규율한다. 총리령과 부령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다.

제5단계는 행정규칙이다. 구체적으로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 수행이나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행정내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 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⁹⁾ 자치법

그림 2-2. 대한민국의 입법 절차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20).

9) 권영성(2008), p. 1004.

규인 조례와 규칙도 행정규칙과 같은 위상을 가지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중앙 정부의 조치만으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된다.

한편 법령의 입법 절차는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의 입법권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의 입법 절차는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 공포 등의 15단계를 거치게 된다.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자료를 본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지 않는 일부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집된 자료의 영문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동일한 자료 출처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의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화 되어 있는 법령 자료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도 참고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 두 자료 출처에서도 수집하지 못한 영문 법령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끝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보 또는 대한민국이 WTO에 자국의 법령 개정사항을 알린 통지문 등을 참고하였다.

5. 자료 구축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맵핑(Mapping) 단계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분야별로 코딩을 위한 비관세조치 관련 문헌을 식별한다. 맵핑은 앞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44개 중 2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코딩(Coding) 단계에서는 MAST 분류체계를 따라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비관세조치(NTM)를 도출하여 각 조치를 체계화된 NTM 식별을 위한 코드에 따라 분류한다. MAST 분류체계에서 NTM 코드는 최초 정보원(Source)으로부터 법률문서(Document), 규제(Regulation)를 거쳐 식별된 NTM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여된다.

MAST 분류체계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원(Source)은 비관세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정보의 원천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법률문서(Document)는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법적인 문서 중 가장 상위에 속하는 법

표 2-2. MAST 법 분류체계

항목	정의	해당 범주	비고
정보원 (Source)	공포 및 시행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WTO 등	웹사이트 접근 가능
법률문서 (Document)	비관세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식적인 문헌 또는 그 문헌의 상위 법령	법률(Act)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 법령
규제 (Regulation)	실질적으로 해당 비관세조치의 내용이 담겨 있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예규 등	법률 자체도 Regulation 이 될 수 있음.
비관세조치 (NTM)	관세를 제외하고 상품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 조치	법령·행정규칙의 각 조항 및 해당 내용	

주: 각 항목은 MAST 분류체계에서 정의하는 방식을 따르며, 국문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영어 원문을 같이 표기함.
자료: UNCTAD(20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률(Act)을 의미한다. 규제(Regulation)는 실제 비관세조치의 내용이 담긴 법령 및 행정규칙¹⁰⁾을 의미하며, 법률 그 자체가 규제가 되거나 또는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규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관세조치는 규제 내에 존재하는 각 조항 및 실제 조치 내용을 말한다.

[그림 2-3]은 UNCTAD에서 제공하는 비관세조치 코딩 단계 작업을 위한 양식 파일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코딩 작업을 거치면 서로 다른 분야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집된 비관세조치들이 일관성을 가진 형태로 정리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이 된다.

코딩 단계는 각 비관세조치를 도출하는 것 외에도 실제 상품과 연결시키기 위해 HS코드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 작업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각 비관세조치가 실제로 어떤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그림 2-3. 비관세조치 코딩 단계 작업 예시

Measure Id	Document Title	Regulation Title Short	NTM Code	Measure Implementation Date	Measure Repealed Date	Measure Description	Measure Description Original	Measure Reference	Affected Products Description	Products Description Original	Affected Regions	Regions Description Original	Measure Objectives	Measure also domestic	Notes
1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B7	2016-08-12		Imported motor vehicles shall be fulfilled by manufactured car noise standards(refer to attached table 13 from Enforcement Rule). Types of motor vehicles are indicated in attachment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의미인 "자동차제작" 라 한다(는 제정되는 자동차	Article 30	Light car, Automobile, Truck, and Twowheeled Vehicle	경차용차, 승용차용차, 화물차용차, 이륜차용차	World	전 세계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able all citizens to live in a calm and tranquil	Yes	
2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ULE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B83	2016-07-28		Importers of motor vehicles shall be certified that manufactured motor vehicles are fulfilled by manufactured car noise standards	① 자동차의 "제정(수입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제조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30.1	Light car, Automobile, Truck, and Twowheeled Vehicle	경차용차, 승용차용차, 화물차용차, 이륜차용차	World	전 세계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able all citizens to live in a calm and tranquil	Yes	
3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ULE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F61	2016-07-28		Importers of motor vehicles shall pay fees to be certified.	① 시용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Article 32.1	Light car, Automobile, Truck, and Twowheeled Vehicle	경차용차, 승용차용차, 화물차용차, 이륜차용차	World	전 세계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able all citizens to live in a calm and tranquil	Yes	
4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B92	2016-08-12		Imported motor vehicles shall be tested in order to confirm that they are fulfilled by manufactured car noise standards.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된 자동차의 소음(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소음시험기준)의 규격(자동차)를 확인	Article 33.1	Light car, Automobile, Truck, and Twowheeled Vehicle	경차용차, 승용차용차, 화물차용차, 이륜차용차	World	전 세계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able all citizens to live in a calm and tranquil	Yes	
5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F61	2016-08-12		Importers of motor vehicles shall pay fees to have motor vehicles tested.	①에 열거된 차종(승용차) 또는 허용된 자동차(제31조)의 차종(승용차)에 대하여	Article 33.4	Light car, Automobile, Truck, and Twowheeled Vehicle	경차용차, 승용차용차, 화물차용차, 이륜차용차	World	전 세계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able all citizens to live in a calm and tranquil	Yes	

자료: UNCTAD가 제공한 DB 구축 작업 양식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10) 법령과 달리 행정규칙의 경우 별도의 맵핑(Mapping) 작업을 거치지 않으며, 분석이 실시되는 법령과 연계된 모든 행정규칙이 분석 대상이 된다.

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HS코드 연계 작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반적인 비관세조치 현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¹⁾

끝으로 교차검증(Cross-checking) 단계에서는 NTM Code에 따른 비관세 조치의 분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대한민국 관보 및 WTO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통해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검증 단계까지는 다루지 않는데, 본 단계의 작업은 향후 HS코드와의 연계 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 데이터베이스 공개 이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11) 식별한 비관세조치와 HS코드를 연계하는 작업은 2017년 실시될 예정이다. 본 작업은 법률적 품명과 HS코드의 품명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자료가 서술하고 있는 자료의 주된 출처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표 3-1]과 같이 법령을 총 44개 분야(편)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CTAD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비관세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25개 분야에 대한 법령을 선별하여 비관세조치 식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선별한 25개 분야 중에는 농업, 축

표 3-1. 한국 법령의 분야별 분류

제1편 헌법	제16편 교육학술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제2편 국회	제17편 문화공보	제32편 전기·가스
제3편 선거·정당	제18편 과학·기술	제33편 국토개발·도시
제4편 행정일반	제19편 재정경제일반	제34편 주택·건축·도로
제5편 국가공무원	제20편 내국세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
제6편 법원	제21편 관세	제36편 보건·의사
제7편 법무	제22편 담배·인삼	제37편 약사
제8편 민사법	제23편 통화·국채·금융	제38편 사회복지
제9편 형사법	제24편 농업	제39편 환경
제10편 지방제도	제25편 축산	제40편 노동
제11편 경찰	제26편 산림	제41편 육운·항공·관광
제12편 민방위·소방	제27편 수산	제42편 해운
제13편 군사	제28편 상업·무역·공업	제43편 정보통신
제14편 병무	제29편 공업규격·계량	제44편 외무
제15편 국가보훈	제30편 공업소유권	

주: 비관세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25개 분야는 굵은 글씨, 본 장에서 분야별 분석을 실시하는 15개 분야는 음영 처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의 법령 분류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산, 수산 등 무역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비관세조치가 다수 발견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제13편 군사와 같이 해당 분야가 포함하는 전체 법령에서 비관세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에서 각 분야의 전체 법령 중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가 식별되는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본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총 25개 분야 중 7개 분야는 비관세조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3개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5개 분야는 14개 절로 구분하며¹²⁾ [표 3-1]의 각 편 순서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¹³⁾

가. 과학 · 기술(제18편)

과학 · 기술 분야 중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다. 동 분야에는 총 24개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데, 이 중 22개가 원자력안전법에서 나타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TBT로 인한 승인 요건(B14)이 있다. 여기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방사성물질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면 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또한 특이한 조치는 방사성 물질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방사선기기 제작, 수입을

12) 제24편 농업, 제27편 수산업의 경우 농수산물질관리법 등 법령이 두 분야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편은 하나의 절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13) 본 절에서 기술할 비관세조치의 분류명은 영어 원문을 국문으로 임의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역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의미상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UNCTAD(2012)에서 제공하는 영문 분류명을 [부록]에 실는다.

위해 설계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를 승인 받고 검사 받으려는 자, 일정 수량 이상의 방사성물질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입항하기 위해 미리 신고하는 자, 방사성물질 등을 포장 및 운반하기 위해 기술 수준 준수를 검사 받으려는 자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F73에 해당하는 비관세조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3-2. 과학·기술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16
1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4
2	B31	라벨링 요건	3
3	B32	마킹 요건	1
4	B33	패키징 요건	2
5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2
6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 요건	2
7	B82	시험 요건	2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3
8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
9	F65	수입면허 요금	1
10	F73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	1
	P	수출관련조치	5
11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2
12	P14	수출등록 요건	1
13	P19	기타 수출 수량 제한	1
14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1
합계			24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담배·인삼(제22편)

담배·인삼 분야 중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은 담배사업법과 인삼산업법이다. 전체 24개의 비관세조치 중 상대적으로 TBT, SPS 조치와 수출관련조

치의 비중이 높다. 이 중 라벨링 요건 B31에 해당하는 조치가 3건으로 나타나는데, 담배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경고문구 및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해서는 상품의 포장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인삼류는 수입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관련조치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인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체형, 수분, 조직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함께 세균수, 대장균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3. 담배·인삼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4
1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1
2	A22	식품과 사료 내의 특정 물질과 접촉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	1
3	A41	최종 상품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기준	1
4	A82	시험 요건	1
	B	무역상기술장벽(TBT)	9
5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의 등록 요건	1
6	B31	라벨링 요건	3
7	B33	패키징 요건	2
8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 요건	2
9	B83	인증 요건	1
	E	수량제한조치	2
10	E61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WTO-bound TRQ	1
11	E9	기타 수량제한조치	1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2
12	F31	가변부과금	1
13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
	P	수출관련조치	7
14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7
합계			24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동 분야에서 무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비관세조치인 수량제한 조치(E)도 2건이 발견된다. 인삼류는 TRQ(저울관세할당)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원산지 조건이 붙지 않는 E611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치는 기타 수량제한조치(E9)로 분류되었다.

동 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에게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F31). 즉 인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농수산업(제24편, 제27편)

농수산업의 경우 SPS조치가 29건, TBT조치가 18건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P장에 해당하는 수출관련조치가 52건에 달하는데, 이 중 46건이 P6인 수출관련기술조치에 해당된다. 특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아래의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기준에 관한 고시가 수출관련기술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고시에는 대상 품목별, 대상 국가별로 수산물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홍콩은 제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유럽연합, 에콰도르에 활어를 수출할 때의 검사기준과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수출하는 검사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비관세조치로 계상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한 가지 비관세조치가 다소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¹⁴⁾ 이러한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척도로

14) “수산물등(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3호에 따른다”로 동일하게 묘사되는 비관세조치가 상이한 국가군과 대상품목 묶음으로 30건 기록되어 있다.

표 3-4. 농수산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29
1	A15	수입자 등록 요건	2
2	A22	식품과 사료 내의 특정 물질과 접촉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	1
3	A31	라벨링 요건	6
4	A42	생산 과정의 위생	7
5	A81	상품등록 요건	1
6	A82	시험 요건	9
7	A83	인증 요건	1
8	A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1
9	A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1
	B	무역상기술장벽(TBT)	18
10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3
11	B19	기타 TBT협정에 나타난 수입금지 혹은 제한	1
12	B22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적 사용	1
13	B31	라벨링 요건	5
14	B33	패키징 요건	1
15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5
16	B82	시험 요건	2
	E	수량제한조치	4
17	E61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WTO-bound TRQ	4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9
18	F31	가변부과금	3
19	F61	세관 검사, 철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5
20	F69	기타 부가요금	1
	P	수출관련조치	52
21	P11	수출금지	1
22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1
23	P14	수출등록 요건	2
24	P5	수출세와 요금	2
25	P61	검사 요건	2
26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44
합계			112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비관세조치의 건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관세조치가 영향을 끼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즉 HS코드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추후 비관세조치 데이터가 완성되면 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농수산업에서 9건의 비관세조치를 기록하고 있는 A82 시험 요건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에도 나타난다. 9건 중 7건이 특정 국가가 특정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면 한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및 검역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가공된 수산물·수산제품은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수생동물은 중국의 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A82에 해당하는 나머지 2건은 농산품에 해당하는 시험 요건으로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므로 전술한 과대 계상 문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¹⁵⁾

라. 축산(제25편)

제25편 축산 분야는 SPS 조치가 393건으로 여타 조치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전술한 비관세조치 분류방법의 문제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과대 계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축산 분야에 SPS 조치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SPS 조치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식품안전이기 때문이다. SPS 조치 중에서는 A83 인증서 요건, A86 격리 요건이 각각 5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A83의 경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큰 규정 아래 대상 품목에 따라 수출대상

15) 특정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군이 상이한 조치는 주로 가축, 수산물 등에서 발견된다.

국을 달리 해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금(애완조류에 한함)류에 대해서는 뉴질랜드·덴마크·폴란드·스페인·스웨덴·필리핀·호주·네덜란드·일본·헝가리·캐나다·영국·독일·미국이 인증서 요건을 첨부해야 하는 수출대상국이 되고,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에 대해서는 뉴질랜드·덴마크·호주·캐나다·미국만이 대상이 된다.¹⁶⁾

A13 프로그램화된 조치 체계는 TBT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부코드로 한 가지 상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SPS 조치를 결합하는 접근 방식의 조치이다.¹⁷⁾ 일반적으로 조치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A13으로 분류

표 3-5. 축산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393
1	A12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금지	25
2	A13	프로그램화된 조치 체계	3
3	A19	기타 SPS로 인한 수입의 금지/제한	2
4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특정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15
5	A22	식품과 사료 내의 특정 물질과 접촉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	3
6	A31	라벨링 요건	11
7	A32	마킹 요건	12
8	A33	패키징 요건	23
9	A41	최종상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	28
10	A42	생산과정의 위생	34
11	A49	기타 위생 요건	7
12	A5	최종상품 내의 동식물 해충과 질병유발 유기체 제거를 위한 처리	4
13	A51	저온/열처리	9
14	A53	훈증	1
15	A59	기타 최종상품 내의 동식물 해충과 질병유발 유기체 제거를 위한 처리	4
16	A62	동물사육 혹은 포획 과정	42

16) 즉 A83도 전술한 A12, P6과 마찬가지로 조치의 개수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SPS와 TBT는 둘 다 기술조치로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여 세부코드가 많은 부분 일치한다.

표 3-5.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17	A63	식품과 사료 공정	15
18	A64	보관과 운송 조건	33
19	A69	기타 생산과 생산 후 절차 요건	13
20	A81	상품등록 요건	3
21	A82	시험 요건	2
22	A83	인증 요건	51
23	A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2
24	A86	격리 요건	51
	B	무역상기술장벽(TBT)	25
25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의 등록 요건	1
26	B19	기타 TBT협정에 나타난 목적을 위한 수입의 금지/제한	1
27	B31	라벨링 요건	3
28	B33	패키징 요건	1
29	B6	상품 정체성 요건	1
30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9
31	B84	검사 요건	1
32	B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7
33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1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7
34	C2	직송 요건	1
35	C3	세관통과항구의 지정	2
36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3
37	C9	기타 절차	1
	E	수량제한조치	2
38	E61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WTO-bound TRQ	2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4
39	F31	가변부과금	1
40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
41	F69	기타 부가요금	1
	P	수출관련조치	5
42	P5	수출세와 요금	1
43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3
44	P9	기타 수출조치	1
합계			436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된다.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닭의 고기(meat), 뼈(bone), 지방(fat), 껍질(skin) 및 건(tendon)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보관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HACCP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여타 분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선적 전 절차와 관련된 조치(C장)도 다수 발견된다. 호주·뉴질랜드·덴마크·네덜란드·헝가리·일본·미국(하와이주에 한함)이 수출하는 꿀벌이 한국으로 직송되어야 한다는 조치는 직송 요건인 C2로 분류되었다. 세관통과항구의 지정(C3)도 2건 발견된다. 미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호주(남위 22°이남지역에 한함)·영국·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김포공항 및 인천항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주도에 사육할 용도의 사슴에 대하여는 제주공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산림(제26편)

산림 분야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잠재적으로 무역과 관련 있는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분야는 품질과 관련된 TBT 조치의 비중이 여타 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산양삼을 수입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B82 시험 요건). 목초액의 경우도 보메비중, 산량 pH, 용해타르, 굴절률, 육안 판별은 종류별로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정의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으로 정하는데, 이는

표 3-6. 산림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9
1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1
2	B31	라벨링 요건	2
3	B33	패키징 요건	1
4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2
5	B6	상품정체성 요건	1
6	B82	시험 요건	2
	E	수량제한조치	1
7	E61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WTO-bound TRQ	1
	F	가격통제조치	3
8	F31	가변부과금	1
9	F61	세관 검사, 철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
합계			13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TBT와 관련된 조치 중 B6 상품 정체성 요건(product identity requirement)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임산물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E611).

바. 상업 · 무역 · 공업(제28편)

상업 · 무역 · 공업 분야 중 비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이 있다. 동 분야가 포함하고 있는 비관세조치 수는 총 58건이고, 이 중 TBT 조치의 수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동 분야의 법률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비관세조치 A, B, C, F, P코드를 모두 아우를 정도로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동 법률의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SPS 혹은 TBT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위해성 검사가 농림축산업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SPS로(A82),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의료기기용, 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상인 경우에는 TBT(B82)로 분류된다.

한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안전보다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므로 SPS 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TBT 조치(B14) 등을 포함한다.

표 3-7. 상업·무역·공업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11
1	A14	SPS로 인한 특수 승인 요건	1
2	A19	기타 SPS로 인한 수입의 금지/제한	1
3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1
4	A31	라벨링 요건	1
5	A32	마킹 요건	1
6	A41	최종 상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	1
7	A64	보관과 운송 조건	1
8	A82	시험 요건	2
9	A84	검사 요건	2
	B	무역상기술장벽(TBT)	21

표 3-7.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10	B11	TBT로 인한 금지	1
11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3
12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의 등록 요건	2
13	B31	라벨링 요건	2
14	B32	마킹 요건	1
15	B33	패키징 요건	1
16	B42	운송과 보관에 관한 TBT 규정	1
17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2
18	B81	상품등록 요건	1
19	B82	시험 요건	2
20	B84	검사 요건	1
21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2
22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1
23	B9	기타 TBT 조치	1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3
24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3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4
25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
26	F65	수입면허 요금	1
27	F73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	1
	P	수출관련조치	19
28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2
29	P14	수출등록 요건	1
30	P19	기타 수출 수량 제한	1
31	P4	재수출에 대한 조치	1
32	P5	수출세와 요금	1
33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10
34	P9	기타 수출조치	3
합계			58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
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1종, 2종 및 3종 화학물질에 대해 ① 해당 특정화
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② 생물

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치는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동 법률에는 2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B11(TBT로 인한 금지)로 식별되었다.

사. 공업규격·계량(제29편)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가 식별되는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표 3-14]에서 알 수 있듯이, 동 분야는 B장에 해당하는 TBT 조치와 F장에 해당하는 가격통제조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규격, 계량과 관련된 조치는 일반적으로 TBT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동 분야는 크게는 B와 F장에 해당하는 두 가지 종류의 비관세조치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TBT 조치 중에서는 라벨링 요건(B31)이 총 32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품질 기준과 관련된 B7, 시험 요건에 해당되는 B82가 각각 27건, 22건으로 많다. 동 분야에서는 여타 분야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B859)도 8건이 식별 된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3조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검사 수량,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그 기

표 3-8. 공업규격·계량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123
1	B11	TBT로 인한 금지	8
2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1
3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2
4	B31	라벨링 요건	32
5	B32	마킹 요건	3
6	B33	패키징 요건	1
7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27
8	B81	상품등록 요건	13
9	B82	시험 요건	22
10	B83	인증 요건	6
11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8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10
12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7
13	F65	수입면허 요금	1
14	F69	기타 부가요금	2
합계			133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수수료와 관련된 조치인 F도 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 에너지이용·광업(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도 마찬가지로 분야의 특성상 SPS 조치는 포함되지 않고 TBT 조치가 25건으로 전체 40개 조치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에서 무역과 관련된 법령은 광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다. 동 분야의 특이점은 TBT 조치 중 제품의 품질과 성과에 관련된 조치인 B7이 7건으로 그 비중이 여타 분야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 중 3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하의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질 규정이다.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석유수입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하고 있는데, 동 조치는 B41(제조과정에 대한 TBT 규정)로 분류되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표 3-9. 에너지이용·광업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25
1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2
2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2
3	B31	라벨링 요건	3
4	B41	제조 과정에 대한 TBT 규정	1
5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2
6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7
7	B82	시험 요건	7
8	B9	기타 TBT 조치	1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3
9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3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6
10	F31	가변부과금	1
11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3
12	F72	특별소비세	2
	P	수출관련조치	6
13	P14	수출등록 요건	2
14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4
합계			40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자. 전기·가스(제32편)

전기·가스 분야 중 무역과 관련이 있는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다. 동 분야 역시 TBT가 23건으로 전체 38건의 비관세조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분야의 특성상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F)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관련조치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수출관련조치는 천연자원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나 천연가스 수출업을 하려는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등록(P1)을 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수출업자는 정부가 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해야한다(P69).

표 3-10. 전기·가스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23
1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1
2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5
3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1
4	B31	라벨링 요건	2
5	B32	마킹 요건	1
6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1
7	B49	생산 또는 생산 후에 대한 기타 요건	2
8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2
9	B81	상품등록 요건	1
10	B82	시험 요건	4
11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1

표 3-10.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12	B9	기타 TBT 조치	2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1
13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요건	1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9
14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6
15	F69	기타 부가요금	2
16	F73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	1
	P	수출관련조치	5
17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1
18	P14	수출등록 요건	3
19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1
합계			38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차. 국토개발 · 도시(제33편)

국토 분야에서는 주차장법, 수도법, 하수도법이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분야 역시 총 17개의 비관세조치 중 14개의 조치가 TBT에 해당된다. 그중에서 TBT와 관련된 적합성 평가(B8)가 총 8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험 요건(B82)에 해당하는 조치는 5건이 식별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합격한 경우 제품검사를 해야 하며 제품검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치인 인증 요건(B83)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조, 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려면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표 3-11. 국토개발 · 도시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14
1	B11	TBT로 인한 금지	1
2	B31	라벨링 요건	2
3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3
4	B82	시험 요건	5
5	B83	인증 요건	3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3
6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3
합계			17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카. 보건 · 의사(제36편)

보건 · 의사 분야에는 160건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며, 이 중 SPS 조치가 94건, TBT 조치가 51건을 기록하여 기술조치가 여타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TBT 요인으로 인한 승인 요건(B14)은 총 5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B14는 국가보안, 환경 등의 이유로 정해진 수입국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B14에 해당하는 조치로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6건이 식별된 A42는 생산 과정 중의 위생 관행(hygienic practices)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식품 제조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기준이 있다면 해당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식품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식용으로 관리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분야의 조치들은 앞서 기술한 축산 등 분야와 유사하게 식품의 종류에 따라 비관세조치가 적용되는 국가군이 일부 상이한 특징이 있다.

표 3-12. 보건·의사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94
1	A12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금지	5
2	A13	프로그램화된 조치 체계	5
3	A14	SPS로 인한 특수 승인 요건	1
4	A15	수입자 등록 요건	3
5	A19	기타 SPS로 인한 수입의 금지/제한	1
6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3
7	A22	식품과 사료 내의 특정 물질과 접촉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	6
8	A31	라벨링 요건	5
9	A33	마킹 요건	2
10	A41	최종 상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	2
11	A42	생산 과정의 위생	6
12	A49	기타 위생 요건	1
13	A51	저온/열처리	4
14	A52	방사선 조사	1
15	A62	동물사육 혹은 포획 과정	6
16	A63	식품과 사료 공정	1
17	A64	보관과 운송 조건	9
18	A69	기타 생산과 생산 후 절차 요건	1
19	A81	상품등록 요건	1
20	A82	시험 요건	4
21	A83	인증 요건	5
22	A84	검사 요건	2
23	A85	이력관리 요건	1
24	A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2
25	A852	생산절차 이력관리	5
26	A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7
27	A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4
28	A86	격리 요건	1

표 3-12.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51
29	B11	TBT로 인한 금지	2
30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5
31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1
32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2
33	B22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적 사용	1
34	B31	라벨링 요건	11
35	B32	마킹 요건	1
36	B33	패키징 요건	2
37	B41	제조 과정에 대한 TBT 규정	2
38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3
39	B49	생산 또는 생산후에 대한 기타 요건	4
40	B6	상품 정체성 요건	2
41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4
42	B82	시험 요건	3
43	B83	인증 요건	2
44	B84	검사 요건	1
45	B852	생산절차 이력관리	1
46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1
47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1
48	B89	기타 TBT 관련 적합성 평가	2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1
49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1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7
50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4
51	F65	수입면허 요금	1
52	F69	기타 부가요금	2
	P	수출관련조치	7
53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2
54	P5	수출세와 요금	1
55	P61	검사 요건	1
56	P69	기타 수출조치	3
합계			160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타. 약사(제37편)

제37편 약사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은 약사 법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분야에서 식별된 비관세조치는 109개에 달하며 이 중 75개가 TBT 조치에 해당된다. 여기서 TBT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위한 수입의 금지 혹은 제한에 해당하는 조치인 B1은 총 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 비타민류와 성호르몬제의 복합제제, 성인이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 등을 지정하고 있다(B11).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는 TBT를 이유로 하는 수입업자의 등록 요건(B14)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초 및 마약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 혹은 수수료(F73)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을 약사법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3. 약사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75
1	B11	TBT로 인한 금지	12
2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9
3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1
4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2
5	B22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적 사용	1
6	B31	라벨링 요건	9

표 3-13.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7	B33	패키징 요건	8
8	B41	제조과정에 대한 TBT 규정	3
9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6
10	B49	생산 또는 생산후에 대한 기타 요건	2
11	B6	상품 정체성 요건	2
12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3
13	B81	상품등록 요건	2
14	B82	시험 요건	4
15	B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2
16	B852	생산절차 이력관리	1
17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2
18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3
19	B89	기타 TBT 관련 적합성 평가	1
20	B9	기타 TBT 조치	2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4
21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4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14
22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2
23	F69	기타 부가요금	1
24	F73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	1
	P	수출관련조치	16
25	P11	수출금지	7
26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4
27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2
28	P9	기타 수출조치	3
합계			109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파. 환경(제39편)

TBT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라벨링 등을 포함하는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환경 분야는 225건의 비관세조치 중 TBT 조치가 절반이 넘는 135건을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다.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공식 시행 이전부터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¹⁸⁾ 다수 국가에 의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 제기를 받아온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대해서 투명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화평법 제38조 2항에 명시된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량과 수입량은 하위 사용자 또는 판매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닐 뿐 아니라 중요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관련 정보 제공 요구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¹⁹⁾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화학물질명, 수입국, 수입량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4). 이외에도 동 법령은 TBT 협정문에 나타난 목적을 위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B1), TBT와 관련된 적합성 평가(B8) 등의 TBT 조치와 더불어 수입신고를 위한 수수료 납부 조치(F69)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총 3건의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F73)을 요구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된다.

표 3-14. 환경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20
1	A15	수입자 등록 요건	2
2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5
3	A31	라벨링 요건	2
4	A33	패키징 요건	1

18) 2011-2차, 3차, 2012-1차.

19) 최보영 외(2015).

표 3-14.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5	A41	최종 상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	2
6	A64	보관과 운송 조건	4
7	A69	기타 생산과 생산후 절차 요건	2
8	A82	시험 요건	1
9	A85	이력관리 요건	1
	B	무역상기술장벽(TBT)	135
10	B11	TBT로 인한 금지	4
11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12
12	B15	TBT로 인한 수입업자 등록 요건	4
13	B19	기타 TBT협정에 나타난 수입금지 혹은 제한	2
14	B21	특정 물질의 잔류 허용량 한계	2
15	B22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적 사용	8
16	B31	라벨링 요건	17
17	B32	마킹 요건	2
18	B33	패키징 요건	2
19	B41	제조 과정에 대한 TBT 규정	4
20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6
21	B49	생산 또는 생산 후에 대한 기타 요건	6
22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14
23	B81	상품등록 요건	2
24	B82	시험 요건	16
25	B83	인증 요건	4
26	B85	생산이력관리 요건	5
27	B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1
28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5
29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17
30	B9	기타 TBT 조치	2
	C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	3
31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 요건	3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22
32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0
33	F65	수입면허 요금	3
34	F69	기타 부가요금	6
35	F73	민감품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	3

표 3-14. 계속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P	수출관련조치	45
36	P11	수출금지	2
37	P13	수출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요건	10
38	P19	기타 수출 수량 제한	4
39	P4	재수출에 대한 조치	2
40	P5	수출세와 요금	3
41	P62	수출국 인증 요건	1
42	P69	기타 수출에 대한 기술조치	21
43	P9	기타 수출조치	2
합계			225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하. 육운·항공·관광(제41편)

육운·항공·관광 분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안전법, 항공법이 무역과 관련 있는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50개의 비관세조치 중 5개 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분야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88%에 해당되는 44개의 조치가 TBT에 해당된다. 여타 분야와 유사하게 육운·항공·관광 분야의 TBT도 다수가 라벨링 요건(B31)과 상품 품질과 성과 요건(B7)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하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조등, 자석안전띠 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부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표 3-15. 육운·항공·관광 비관세조치 현황

구분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수
	B	무역상기술장벽(TBT)	44
1	B14	TBT로 인한 승인 요건	2
2	B31	라벨링 요건	13
3	B42	운송과 보관에 대한 TBT 규정	1
4	B7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16
5	B82	시험 요건	8
6	B853	인도 후 상품의 유통과 장소	3
7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1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6
8	F61	세관 검사,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6
합계			50

자료: UNCTAD(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분야별 비관세조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19개 부처 관련 80개 법률문서(legal document)에서 240개의 비관세조치 관련 규제(regulation)를 유지하고 있으며, MAST의 비관세조치 코드 분류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법령 분야에서 총 330가지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 분야 내에서 각 법령들로부터의 조치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NTM의 건수는 1,439건에 이른다.²⁰⁾

MAST의 분류체계에 따른 한국의 비관세조치 코드별 비관세조치 건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기술적조치로 분류되는 SPS와 TBT 조

표 4-1. 한국의 비관세조치 개황

항목	건(수)
비관세조치(NTM)	1,439
비관세조치(NTM) 종류	330
비관세조치 관련 규제(Regulation)	240
비관세조치 관련 법률문서(Document)	80
관련 소관부처	19

자료: 제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 예를 들어 A21(미생물적인 물질을 제외한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에 대한 잔류 허용치)은 우리나라의 인삼산업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나타난다. 인삼산업법의 경우 인삼류의 일반검사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하에서 명시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축산물의 금속이물 2mm 이하, 비금속 이물 3mm 이하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4-2. 유형별 비관세조치 수

코드	비관세조치 유형	건(수)	비중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552	38.4%
B	무역상기술장벽(TBT)	589	40.9%
C	선적 전 검사	22	1.5%
E	수량제한조치	9	0.6%
F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통제조치	101	7.0%
P	수출관련조치	166	11.5%
합계		1,439	100.0%

자료: 제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치는 각각 552건과 589건으로 나타나 총 비관세조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4%와 40.9%이며, 이는 여타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최보영 외(2015)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총 9건의 수량제한조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8건은 WTO-bound 저울할당관세(TRQ)조치로 농축산품목을 다루는 양곡관리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등에서 나타난다. F장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통제조치”는 총 101건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를 차지한다. 이 중 F61 “세관 검사에 대한 절차와 서비스관련 수수료”에 관한 조치가 총 64건으로 그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이와 유사한 F69 “기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가 15건, F65 “수입허가증 수수료”가 7건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장에 해당되는 수출관련조치도 11.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관련조치는 주로 농축수산물과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 금속, 비금속광물제품과 같은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료 분석의 대상이 된 15개의 분야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나타난 법률 문서, 규제, NTM 건수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법률 문서를 기준으로 보면 제39편 환경, 제24편 및 제26편 농수산업, 제36편 보건·의

사 순으로 많은 비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NTM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25편 축산 분야의 비관세조치 건수가 여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국가군이 다른 경우 하나의 조치가 서로 다른 NTM 건수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과 관련된 하나의 비관세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에 따라 수출국가군이 다른 경우가 많아 비관세조치 건수가 과대 계상되는 경향이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과대계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처럼,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29편 공업규

표 4-3. 분야별 법률문서, 규제, 비관세조치(NTM)

구분	항목	법률문서 (Document)	규제 (Regulation)	NTM(종류)	NTM(건수)
1	제25편 축산	6	53	44	436
2	제39편 환경	19	51	43	225
3	제36편 보건·의사	10	20	56	160
4	제29편 공업규격·계량	5	32	14	133
5	제24,27편 농수산업	12	24	34	112
6	제37편 약사	2	6	28	109
7	제28편 상업·무역·공업	4	5	33	58
8	제41편 육운·항공·관광	4	7	8	50
9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4	12	14	40
10	제32편 전기·가스	3	6	19	38
11	제22편 담배·인삼	2	4	8	24
12	제18편 과학·기술	3	9	14	24
13	제33편 국토개발·도시	3	6	6	17
14	제26편 산림	3	5	9	13
	합계	80	240	330	1,439

자료: 제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 예를 들어 A12 “수입 자격에 대한 지정학적 제한”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가 달라 동일한 내용의 조치가 총 27개로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다.

격·계량은 비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법적인 문서가 5건으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관세조치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주로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비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의 비관세조치는 종종 무역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부처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SPS 조치는 원칙적으로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동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조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관

표 4-4. 소관부처별 비관세조치 수

순위	소관부처	NTM(종류)	NTM(건수)	비중(건수)
1	농림축산식품부	61	475	30.6%
2	산업통상자원부	35	235	15.1%
3	식품의약품안전처	56	229	14.8%
4	환경부	42	225	14.5%
5	해양수산부	51	142	9.1%
6	국토교통부	9	54	3.5%
7	보건복지부	25	49	3.2%
8	농림축산검역본부	8	44	2.8%
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38	2.4%
10	원자력안전위원회	14	24	1.5%
11	산림청	9	11	0.7%
12	국립산림과학원	6	8	0.5%
13	국가기술표준원	4	7	0.5%
14	기획재정부	7	7	0.5%
15	국민안전처	2	2	0.1%
16	국립환경과학원	1	1	0.1%
17	국무조정실	1	1	0.1%
	합계	335	1,552	100.0%

주: 하나의 비관세조치에 두 소관부처가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계상하기 때문에 총 NTM 건수가 1,439개보다 크게 집계됨.
자료: 저자 작성.

리원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조치의 경우 환경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본 연구자료는 한국 비관세장벽의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결과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을 통해 해당 비관세조치의 구체적인 적용범위(HS코드 연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작업은 법령 분석을 기초로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계적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HS코드와의 연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관세조치와 품목 간 연결이 완료되면 통계적/계량적 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이 무역을 촉진하거나 또는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경쟁도 분석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산업별 분석을 통해 생산성 효과와 고용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 ASEAN 10개 회원국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동일한 분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다. 현재 한국과 더불어 RCEP 협상 참여 중인 국가(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도 2017년 초까지 동일한 분류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해 우리 상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B화된 비관세조치와 실제 기업 차원에서 경험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연계한다면 실제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 박종찬, 박상길. 2010.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5), pp. 25~54
-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 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2015.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하태정, 문선용. 2014. 「가격차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 추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4), pp. 307~330.

[외국문 자료]

- Cadot, O., A. Asprilla, J. Gourdon, C. Knebel, and R. Peters. 2015. "Deep Regional Integration and Non-Tariff Measures: A Methodology for Data Analysis." UNCTAD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Research Study Series No. 69.
- Cadot, O., E. Munadi, and L. Y. Ing. 2015. "Streamlining Non-Tariff Measures in ASEAN: The Way Forward." *Asian Economic Papers*.
- Evenett, S., & J. Fritz. 2015. *The Tide Turns? Trade, Protectionism, and Slowing Global Growth*. Centre for Economic Policy(CEPR).
- UNCTAD. 2012.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February 2012 Version. Geneva: United Nations.

[온라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lst>(검색일: 2016. 10. 2).

- 대한민국 헌법.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검색일: 2016. 10. 20).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검색일: 2016. 10. 20).
- WTO SPS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e.htm(검색일: 2016. 10. 24).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A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1	Prohibitions/restrictions of imports for SPS reasons
A11	Temporary geographic prohibitions for SPS reasons
A12	Geographical restrictions on eligibility
A13	Systems Approach
A14	Special Authorization requirement for SPS reasons
A15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importers
A19	Prohibitions/restrictions of imports for SPS reasons n.e.s.
A2	Tolerance limits for residues and restricted use of substances
A21	Tolerance limits for residues of or contamination by certain (non-microbiological) substances
A22	Restricted use of certain substances in foods and feeds and their contact materials
A3	Labelling, Marking and Packaging requirements
A31	Labelling requirements
A32	Marking requirements
A33	Packaging requirements
A4	Hygienic requirements
A41	Microbiological criteria of the final product
A42	Hygienic practices during production
A49	Hygienic requirements n.e.s.
A5	Treatment for elimination of plant and animal pests and disease-causing organisms in the final product (e.g. Post-harvest treatment)
A51	Cold/heat treatment
A52	Irradiation
A53	Fumigation
A59	Treatment for elimination of plant and animal pests and disease-causing organisms in the final product, n.e.s.
A6	Other requirements on production or post-production processes
A61	Plant growth processes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A62	Animal raising or catching processes
A63	Food and feed processing
A64	Storage and transport conditions
A69	Other requirements on production or post-production processes, n.e.s
A8	Conformity assessment related to SPS
A81	Product registration requirement
A82	Testing requirement
A83	Certification requirement
A84	Inspection requirement
A85	Traceability requirements
A851	Origin of materials and parts
A852	Processing history
A853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products after delivery
A859	Traceability requirements, n.e.s.
A86	Quarantine requirement
A89	Conformity assessment related to SPS n.e.s.
A9	SPS measures n.e.s.
B	Technical barriers to trade
B1	Prohibitions/restrictions of imports for objectives set out in the TBT agreement
B11	Prohibition for TBT reasons
B14	Authorization requirement for TBT reasons
B15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importers for TBT reasons
B19	Prohibitions/restrictions of imports for objectives set out in the TBT agreement, n.e.s.
B2	Tolerance limits for residues and restricted use of substances
B21	Tolerance limits for residues of or contamination by certain substances
B22	Restricted use of certain substances
B3	Labelling, Marking and Packaging requirements
B31	Labelling requirements
B32	Marking requirements
B33	Packaging requirements
B4	Production or Post-Production requirements
B41	TBT regulations on production processes
B42	TBT regulations on transport and storage
B49	Production or Post-Production requirements n.e.s.
B6	Product identity requirement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B7	Product quality or performance requirement
B8	Conformity assessment related to TBT
B81	Product registration requirement
B82	Testing requirement
B83	Certification requirement
B84	Inspection requirement
B85	Traceability information requirements
B851	Origin of materials and parts
B852	Processing history
B853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products after delivery
B859	Traceability requirements, n.e.s.
B89	Conformity assessment related to TBT n.e.s.
B9	TBT Measures n.e.s.
C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
C1	Pre-shipment inspection
C2	Direct consignment requirement
C3	Requirement to pass through specified port of customs
C4	Import monitoring and surveillance requirements and other automatic licensing measures
C9	Other formalities, n.e.s.
D	Contingent trade protective measures
D1	Antidumping measure
D11	Antidumping investigation
D12	Antidumping duty
D13	Price undertaking
D2	Countervailing measure
D21	Countervailing investigation
D22	Countervailing duty
D23	Undertaking
D3	Safeguard measures
D31	General (multilateral) safeguard
D311	Safeguard investigation
D312	Safeguard duty
D313	Safeguard quantitative restriction
D314	Safeguard measure, other form
D32	Agricultural special safeguard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D321	Volume-based agricultural special safeguard
D322	Price-based agricultural special safeguard
D39	Safeguard, n.e.s.
E	Non-automatic licensing, quotas, prohibitions and quantity control measures other than for SPS or TBT reasons
E1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procedures other than authorizations for SPS or TBT reasons
E11	Licensing for economic reasons
E111	Licensing procedure with no specific ex-ante criteria
E112	Licensing for specified use
E113	Licensing linked with local production
E119	Licensing for economic reasons n.e.s.
E12	Licensing for non-economic reasons
E121	Licensing for religious, moral or cultural reasons
E122	Licensing for political reasons
E129	Licensing for non-economic reasons n.e.s.
E2	Quotas
E21	Permanent
E211	Global allocation
E212	Country allocation
E22	Seasonal quotas
E221	Global allocation
E222	Country allocation
E23	Temporary
E231	Global allocation
E232	Country allocation
E3	Prohibitions other than for SPS and TBT reasons
E31	Prohibition for economic reasons
E311	Full prohibition (import ban)
E312	Seasonal prohibition
E313	Temporary prohibition, including suspension of issuance of licences
E314	Prohibition of importation in bulk
E315	Prohibition of products infringing paten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316	Prohibition of used, repaired or remanufactured goods
E319	Prohibition for economic reasons, n.e.s.
E32	Prohibition for non-economic reasons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E321	Prohibition for religious, moral or cultural reasons
E322	Prohibition for political reasons (embargo)
E329	Prohibition for non-economic reasons, n.e.s.
E5	Export restraint arrangement
E51	Voluntary export restraint arrangements (VERs)
E511	Quota agreement
E512	Consultation agreement
E513	Administrative co-operation agreement
E59	Export restraint arrangements n.e.s.
E6	Tariff Rate Quotas
E61	WTO bound TRQs
E611	Global allocation
E612	Country allocation
E62	Other TRQs
E621	Global allocation
E622	Country allocation
E9	Quantity control measures n.e.s.
F	Price control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taxes and charges
F1	Administrative measures affecting customs value
F11	Minimum import prices
F12	Reference prices
F19	Other administrative measures affecting the customs value, n.e.s.
F2	Voluntary export price restraints (VEPRs)
F3	Variable charges
F31	Variable levies
F32	Variable components
F39	Variable charges n.e.s.
F4	Customs Surcharges
F5	Seasonal duties
F6	Additional taxes and charges levied in connection to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F61	Custom inspection, processing and servicing fees
F62	Merchandise handling or storing fees
F63	Tax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F64	Stamp tax
F65	Import licence fee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F66	Consular invoice fee
F67	Statistical tax
F68	Tax on transport facilities
F69	Additional charges n.e.s.
F7	Internal taxes and charges levied on imports
F71	Consumption taxes
F72	Excise taxes
F73	Taxes and charges for sensitive product categories
F79	Internal taxes and charges levied on imports n.e.s.
F8	Decreed Customs Valuations
F9	Pricecontrolmeasuresn.e.s
G	Finance measures
G1	Advance payment requirement
G11	Advance import deposit
G12	Cash margin requirement
G13	Advance payment of customs duties
G14	Refundable deposits for sensitive product categories
G19	Advance payment requirements n.e.s.
G2	Multiple exchange rates
G3	Regulation on official foreign exchange allocation
G31	Prohibition of foreign exchange allocation
G32	Bank authorization
G33	Authorization linked with non-official foreign exchange
G331	External foreign exchange
G332	Importers' own foreign exchange
G339	Licence linked with non-official foreign exchange, n.e.s.
G39	Regulation on official foreign exchange allocation, n.e.s.
G4	Regulations concerning terms of payment for imports
G9	Financemeasuresn.e.s.
H	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
H1	State trading enterprises, for importing; other selective import channels
H11	State trading enterprises, for importing
H19	Other selective import channels, n.e.s.
H2	Compulsory use of national services
H21	Compulsory national insurance
H22	Compulsory national transport

코드	비관세조치 분류 (영문)
H29	Compulsory national service, n.e.s.
H9	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s, n.e.s.
I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I1	Local content measures
I2	Trade balancing measures
I9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n.e.s
J	Distribution restrictions
J1	Geographical restriction
J2	Restriction on resellers
K	Restriction on post-sales services
L	Subsidies (excluding export subsidies under P7)
M	Government procurement restrictions
N	Intellectual property
O	Rules of origin
P	Export related measures
P1	Export license, quota, prohibition and other quantitative restriction
P11	Export Prohibition
P12	Export quotas
P13	Licensing or permit requirements to export
P14	Export Registration requirements
P19	Export quantitative restrictions, n.e.s.
P2	State trading enterprises, for exporting: other selective export channels
P21	State trading enterprises, for exporting
P29	Other selective export channels, n.e.s.
P3	Export price control measures
P4	Measures on Re-Export
P5	Export taxes and charges
P6	Export technical measures
P61	Inspection requirement
P62	Certification required by the exporting country
P69	Export technical measures, n.e.s.
P7	Export subsidies
P8	Export credits
P9	Export measures n.e.s.

자료: UNCTAD(2012).

An Analysis of Korea's Non-tariff Measures: Focused on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KIM Jong Duk, CHOI Bo-Young, EOM Jun-Hyun, and Chung Min-Chirl

Tariff rates have become lower under the GATT/WTO regime while the use of non-tariff measures has increased acquiring growing importance. Despite the significance, less work has been done to assess the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on various economic variables compared to the effects of tariffs. This was mainly due to limited data on non-tariff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troduce and illustrate the newly collected data on Korea's NTM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UNCTAD NTM databas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Multiple Agency Support Team (MAST), UNCTAD has collaborated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llect non-tariff measures data. Currently the data cover 57 countries and more than 80% of world trade. However, the data has yet to include information on Korea's NTMs.

First, this report illustrates the legal structure and sources of Korea and show how the Korea NTM data is collected from the sources. We collect NTMs from regulations of all types at national level, which come into effect in 2016. The primary source of the Korean NTM data i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which is a centralized source for regulations of all types at all levels across government bodies.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is website, we compile and organize the data following the MAST classification.

Out of 44 fields, we identify 25 fields that are potentially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In this report, we selectively choose 15 priority fields and illustrate NTMs and regulations of Korea. We identified around 1,400 NTMs for the 15 fields. Of the 1,400 NTMs, 40% of the NTMs are classified as technical measures, either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r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Many of the NTMs were concentrated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ylized fact. On the other hand, no NTMs were found in fields such as military, labor or marine transportation. We also found that many government ministries or agencies other tha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e involved in NTMs. This implies that many of the NTMs of Korea have non-economic objectives such as food safety or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it is not covered in this report, the information on products that are potentially affected by each NTMs classified by HS codes at 10-digit level will be added to the data. The new NTM database once finished collecting, will allow us to implement further empirical study including evaluation on various NTMs on trade and welfare.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16-02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이재호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손성현·권가원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세별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강부균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김준영·홍석기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자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김준영·이보람·张慧智·朴英爱·王箫轲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김종덕·최보영·엄준현·정민철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관행 변화 분석 / 이정균·김준영·임소정·안국산·미무라 미쓰히로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오종혁·박진희·김홍원
- 2015년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최유정·홍석기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엄준현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이효진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김윤옥·서현교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최호락

김종덕(金鍾德)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現, E-mail: kim,jd@kiep.go.kr)

저서 및 논문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공저, 2014)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공저, 2015) 외

최보영(崔輔榮)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by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GTT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공저, 2014)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공저, 2015) 외

엄준현(嚴峻鉉)

고려대학교 국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eom@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공저, 2014)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 리스크와 대응 방안』 (공저, 2016) 외

정민철(鄭旻澈)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現, E-mail: m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수입다양성 증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회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 Analysis of Korea's Non-tariff Measures: Focused on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KIM Jong Duk, CHOI Bo-Young, EOM Jun-Hyun, and Chung Min-Chirl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최근 보호주의 기조와 함께 무역장애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UNCTAD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법령 총 25개 분야에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한다.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류는 UNCTA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의 분류체계를 따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구축된 DB는 향후 비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9 788932 224275

94320

ISBN 978-89-322-2427-5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